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

— 구비서류 안내 [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03.29.(금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]

구분	서류 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공동 서류	○		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본인	• [건본주택]에 비치
	○		서약서	본인	• [건본주택]에 비치
	○		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/ 단, 대리신청 불가)
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만 가능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전원) /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확인 /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확인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부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까지 발급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
신혼 부부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(혼인 신고일 확인)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세대원	•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
	○		소득 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
	○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	○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○		임신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(임신진단서 이외 불가)
	○		출산이행각서		• [건본주택]에 비치, 임신의 경우
	○		입양관계증명서		•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출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• 주민번호, 과거 주소변동 사항(1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
	○		자산증빙서류(추첨제)	본인	• 부동산자산가액 증빙서류 ※ 세대구성원 전원 소유여부 확인
	○		최하층 우선배정입증서류	본인	•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시(군 복무 기간을 명시)
	○		해외 근무자(단신부임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증빙서류 확인
부적격 통보 받은자	○		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	해당 주택	• 일반 주택 :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• 무허가 주택 :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용을 확인하는 공문 • 폐가, 멸실 주택 :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소형차가 주택 등)
	○		당첨사실 소명 서류	해당자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	○		단신부임 입증 서류	본인	•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: ① 비자발급내역,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세대원	•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까지 발급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
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	해당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•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	
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위임용 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4.03.29)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,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  
 ※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 
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·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

— 구비서류 안내 [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03.29.(금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]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※ 전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'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(이직)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, 전년도 동일직장,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, 해당 직장의 연봉/근로계약서(직인날인)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/세무서
	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(이직)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※ '근무처별 소득명세' 표상 '주(현)' 총급여 금액을 '재직증명서'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/세무서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직장가입자만 해당 (건강보험증 기준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(명세서))(직인날인)	①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(사업자)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- 국민연금 가입자 :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) - 국민연금 미가입자 :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) (신고서상 금액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)	①, ② 세무서 ③ 국민연금 관리공단 /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③ 전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	①, ②, ③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가입자 :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)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: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)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: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(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) → (신고서상 금액(매출액-매입액)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)	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③, ④ 세무서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원본, 직인날인)	① 해당 직장 /세무서 ②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공공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)	① 주민센터	
일용근로소득자	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	① 세무서 /해당 직장	
무직자 (만19세이상)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)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	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	

소득구분	비율	소득금액(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)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생아 우선공급, 우선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이하	~7,004,509원	~8,248,467원	~8,775,071원	~9,563,282원	~10,351,493원	~11,139,704원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120% 이하	~8,405,411원	~9,898,160원	~10,530,085원	~11,475,938원	~12,421,792원	~13,367,645원
신생아 일반공급, 일반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00% 초과 140% 이하	7,004,510원~ 9,806,313원	8,248,468원~ 11,547,854원	8,775,072원~ 12,285,099원	9,563,283원~ 13,388,595원	10,351,494원~ 14,492,090원	11,139,705원~ 15,595,586원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초과 160% 이하	8,405,412원~ 11,207,214원	9,898,161원~ 13,197,547원	10,530,086원~ 14,040,114원	11,475,939원~ 15,301,251원	12,421,793원~ 16,562,389원	13,367,646원~ 17,823,526원
추첨공급	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	14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9,806,314원~	11,547,855원~	12,285,100원~	13,388,596원~	14,492,091원~	15,595,587원~
	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: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788,211) × (N-8)} \*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  
 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4.03.29)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,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 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  
 ※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 
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·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# 신혼부부 · 생애최초 자산 증빙서류 안내

— 자산 기준 [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03.29.(금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]

구분	금액	내용												
부동산 (건물+토지)	3억3,100 만원 이하	건축물	-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	
토지	-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*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*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*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*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-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													

— 자산 증빙서류 [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03.29.(금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]

해당자격	소득증빙 제출서류		발급처
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	소유증빙	① 부동산 소유현황(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, 주민등록번호 공개) ② 건물(토지)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)	▪ 대법원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
	자산가액 증빙	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: 공동(개별)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: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-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: 이택스(서울) 및 위택스(서울 외)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-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: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,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※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,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	▪ 주민센터 ▪ 이택스 (etax.seoul.go.kr) ▪ 위택스 (www.wetax.go.kr)
	해당자	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: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,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: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	▪ 주민센터 ▪ 지자체 축산과 ▪ 토지이음 (www.eum.go.kr)
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(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, 주민등록번호 공개)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(전국자치단체) -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	▪ 대법원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▪ 시군구청(또는 위택스)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4.03.29)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,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  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  
 ※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 
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·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